#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38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 김동아 · 김문수 · 정준호

허성무 · 김준혁 · 김영호

최기상 • 이연희 • 정성호

김우영 • 윤후덕 • 김정호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안전관리, 공해관리,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을 관리기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단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,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. 특히, 노후 기반시설 붕괴, 유해화학물질 누출,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이러한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관리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안전관리체계로는 산업단지에 상존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체계적·효과적으로대응하기 어려우며,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, 공해관리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·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45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 중 "관리기관은 안전관리, 공해관리, 환경관리 등에"를 "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"로, "지도를 할 수 있다"를 "지도·감독을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산업단지의 안전관리
- 2. 산업단지의 공해관리
- 3. 산업단지의 환경관리
- 4. 그 밖에 산업단지의 안전이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)	제45조(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)
관리기관은 안전관리, 공해관	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
리,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	<u>에</u>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	
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<u>지</u>	<u>지도·감독을 하여</u>
도를 할 수 있다.	<u>야 한다</u> .
<u>&lt;신 설&gt;</u>	1. 산업단지의 안전관리
<u>&lt;신 설&gt;</u>	2. 산업단지의 공해관리
<u>&lt;신 설&gt;</u>	3. 산업단지의 환경관리
<u>&lt;신 설&gt;</u>	4. 그 밖에 산업단지의 안전이
	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
	사항